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출입국 심사 우대 근거 마련〉
■ 이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06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출입국 심사 우대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준석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7. 10.

다. 회부연월일 : 2025.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 등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 이공계인력이 탁월한 업적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연구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출입국 심사 우대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하여 출입국 심사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 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u>연구장려금의 지원</u> 등) ①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u>지원</u>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출입국 심사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0조¹⁾는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을 “핵심 이공계인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매년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과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력”으로 지칭하고, 연구장려금 및 생활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동 법 시행령 제22조2)에서 “핵심 이공계인력”은 과학 분야 노벨상 또는 수학 분야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상을 받은 사람, 과학기술훈장을 받거나 과학기술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하여 출입국 심사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출입국 심사시 우대 대상이 될 경우 법무부에서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 받은 후 동반 3인까지 출국 시 보안검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핵심 이공계인력(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선정대상자의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와 그로 인한 국가공헌도 등의 업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핵심 이공계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과학 분야 노벨상 또는 수학 분야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상을 받은 사람

2. 과학기술훈장을 받거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3. 신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한 사람

4. 세계 저명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거나 인용되는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5. 과학기술 관련 저술활동이나 강연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과학기술 발전 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은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와 개인별 국가공헌도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조금은 연구장려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연구장려금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생활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⑤ 핵심 이공계인력의 후보자 추천절차, 평가기준·평가절차, 연구장려금 및 생활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절차·지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색 전용 통로(fast track)을 포함하여 국내 공항에서 출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음.

○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카드 제도란 국가가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 사회적 예우를 다하고 교통약자 배려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을 위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는 것임.

□ 현재 이러한 출입국 우대카드의 발급 대상이 되는 사람은 첨단 분야 외국인 최우수인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가족친화인 증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업체, 과학기술유공자 등이 있음.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제도 운영 현황>

연 번	구분	선정기관	연 번	구분	선정기관
1	세계인의 날 포상자	법무부	14	우수기업인	인천공 항공사
2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15	외국인투자 해외 모기업 임직원	KOTRA
3	특별귀화자 및 명예국민		16	외국인 금융투자가	금융중 심지지 원센터
4	법무부 장관 인정자		17	독립유공자 및 재방한 행사 초청 해외 참전용사 작계자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보훈부
5	범죄피해자지원 우수법인		18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부

연 번	구분	선정기관	연 번	구분	선정기관
6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19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지원센터
7	첨단분야 외국인 최우수인재		20	동반성장지수 우수업체	동반성장위
8	조건부 고액투자자		21	문화예술지원인증단체	문체부
9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자		22	과학기술유공자	과기정통부
10	D-8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23	상생협력우수기업	중기부
11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법무보호복지공단	24	건강친화인증기업	복지부
12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 보유자 중 국세청장이 선정한 사람	국세청	25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여기부 등
1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관세청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해 출입국 심사시 우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예우를 하기 위한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다는 점에서 타당할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이공계 인력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한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출입국 편의와 같은 실질적 지원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이공계 인재육성에 대한 국가 정책 의지를 시사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에서 수용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6